

## 80310 조경토공

### 1. 일반사항

#### 1.1 적용범위

이 시방서는 터파기, 되메우기, 잔토처리 등 조경공사와 관련한 토공 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

#### 1.2 기성산출기준

##### 1.2.1 단 가

터파기, 되메우기, 잔토처리, 흙쌓기의 수량은 모두 굴착 전 또는 다짐 후의 체적( $m^3$ )으로 한다.

##### 1.3 적용규준

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
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

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

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

#### 1.4 제출물

다음 사항은 "10130 제출물"에 따라 제출한다.

##### 1.4.1 자재제품자료

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.

가. 신고제품

- 표토

- 흙쌓기 및 되메우기재료

### 2. 자재

#### 2.1 표토

표토는 토양학 분류에 의한 O층과 A층을 포함하는 표층토양으로 토양산도 pH 5~7이어야 하며, 그 두께는 지표면에서 통상 20~60cm 깊이까지 하되,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 2.2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

### 2.2.1 흙쌓기 재료

- 가. 현장 발생토 중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, 반입토는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토사를 사용하되, 점토덩어리나 유해한 유기물, 쓰레기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.
- 나. 흙쌓기 재료의 품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 $75\mu\text{m}$  통과량이 25%이하이고, 포함된 자갈의 최대치수는 반입토의 경우 25mm, 현장발생토의 경우 50mm인 토사를 사용한다.

### 2.2.2 되메우기 재료

되메우기 재료는 모래질 흙 또는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.

## 3. 시 공

### 3.1 표토모으기

#### 3.1.1 부지정리

표토수거에 장해가 되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을 제거하고, 큰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잔재물 또한 남김없이 치운다.

#### 3.1.2 표토수거

토양조사에 근거하여 일정 두께로 표토를 수거하되, 큰 돌이나 나무뿌리, 철거물 잔재, 기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.

#### 3.1.3 적치 및 보호

표토는 안식각을 유지하여 사다리꼴로 쌓되, 그 높이는 1m를 표준으로 하여 최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, 비닐 등으로 덮어 단단히 고정하며,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 3.2 터파기

- 가.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나. 빗물이나 고인 물, 솟아나는 물,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.
- 다. 수도관, 가스관,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.

### 3.3 되메우기

- 가.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KS F 2312에 따른 최대밀도

- 가. 점성토의 경우 85%, 비점성토의 경우 90%이상이 되도록 한다. 이때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,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.
- 나.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,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.

#### 3.4 잔토처리

- 가.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,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.
- 나.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 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.

#### 3.5 흙 쌓기

- 가. 흙 쌓기 장소에 고여 있는 물은 시공 전에 배수하여야 하며, 유입된 물이나 솟아나는 물의 경우 배수조치 한 뒤에 흙 쌓기 하여야 한다.
- 나. 흙 쌓기면 마무리면의 높이 허용차는  $\pm 50\text{mm}$ 이내로 한다.